

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

- 2018년도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-

※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“2018년도 제16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”에 의함

서류제출 대상자	○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
합격예정자 발표일	○ 2018. 2. 21.(수) 09:00
응시자격 서류 접수기간	○ 2018. 2. 21.(수) ~ 3. 7.(수) ※ 접수시간 : 09:00~18:00 (토, 일, 공휴일 제외)
서류제출 방법 ※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	○ 등기우편접수 : '18. 3. 7.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※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반드시 '2018년 제 16회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제출서류' 문구표기 ○ 방문접수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(09:00~18:00) (04373)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1(한강로3가, GS한강에클라트 202호)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
서류접수 확인방법	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(http://lic.welfare.net) → 개인 아이디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시험서류 접수 조회 ※ 서류심사결과에 대한 안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서류제출자 유 의사항

- 졸업(학위)증명서, 성적증명서, 기본증명서는 **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**
※ 단, '사본'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, 관공서 팩스민원은 원본으로 인정함.
- 응시자격 서류접수일 기준 **2급 자격증 소지자인** 경우 아래 서류 미제출
- 성적증명서
-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
-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**부적격(학력미달, 이수과목 부족, 경력 미충족, 서류 미제출 등)** 시에는 **합격예정을 취소**함.
- **제1회(2003년)부터 제7회(2009년)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: 공통서류(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, 기본증명서)만 제출**함
- 응시자격서류제출 시 **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 할 경우 반환 불가**
※ 사진 및 서류심사비 불필요

제출서류 종류 - 공통서류, 유형별 응시자격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

- 공통서류(必)**
 -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(www.Q-net.or.kr 또는 <http://lic.welfare.net>에서 다운로드)
 - 기본증명서 원본 1부 (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)[신원조회용]
-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(必)** - '2018년도 제16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시험 공고' 및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, 한국사회복지사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
[서식 1]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

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

1. 수험자 서약사항

본인은 2018년도 제16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로서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,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서류심사를 신청합니다.

2. 수험자 기재사항 [*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]

자격명	사회복지사 1급	사회복지사 자격번호 ※ 2급 소지자인 경우 2003년 ~ 2009년 응시여부	응시() 미응시()
성명	주민등록번호	-	
전화번호	휴대폰 : _____ 비상연락처 : _____		
최종학력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원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교(4년제)	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대학(2년제)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졸

3. 제출서류 내역 [해당란에

공통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증명서(원본) -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원 졸업증명서(원본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원 성적증명서(원본) ※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교 졸업증명서(원본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교 성적증명서(원본) ※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대학 졸업증명서(원본)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대학 성적증명서(원본) ※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(원본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(원본) ※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시설(법인)신고증(사본)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(원본) <input type="checkbox"/> 정관(사본) * 법인 및 단체인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학력인정확인서(원본) ※ 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보험득실확인서(사본) 확인을 아포스티유로 대체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증(사본)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입국사실증명서(원본)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대학 졸업·성적증명서(사본)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(원본) ※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 ※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로 번역·공증한 서류(원본) 첨부		
제출서류			
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신청인 _____ 서명

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

< 주의 사항 >

1.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,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합니다.
2. 제1회(2003년)~제7회(2009년)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는 수험자는 본 신청서와 기본증명서[신원 조회용]만 제출합니다.(증빙서류 제출생략)
3. 일반우편으로 발송 시 수취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.
4.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5. 서류도착 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(lic.welfare.net)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6. 서류심사에 따른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발표 이후 자격발급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☞ 응시자격 서류제출 시 봉투 안 사진을 넣어서 보낼 경우 미고지 파기함
7. 서류심사 간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재하신 연락처로 개별연락드리오니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8. 수수료는 납부하였으므로 서류제출 시 수수료(현금)를 봉투 안에 넣지 마시기 바라며,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

성 명		생년월일	
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
주 소			

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상기인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.

- 다 음 -

근무부서	직종	담당업무	경력기간	확인자
			~ (년 개월)	(인)
			~ (년 개월)	
			~ (년 개월)	

- ※ 근무부서 및 직종,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확인자는 **경력 기재란을 확인하고 투명테이프를 부착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총 근무시간으로 표기(1일 8시간 기준, 1년 2,080시간)
- ※ 이직으로 인한 2곳 이상의 기관의 경력합산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서 개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해 처벌받습니다.

년 월 일

시설명 : (직인)

시설 대표자		시설 연락처	
시설등록번호		등록일	
시설 소재지			

- ※ 사회복지시설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행정기관 고유번호 등 정보를 기재합니다.
- ※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해당 서식으로 같음할 수 있습니다.

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

[서식 3]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

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

〈2017.05.23.개정〉

실습생 인적사항	성 명		생 년 월 일	※ '주민등록번호' 앞자리 6개		
	전 화 번 호		휴 대 전 화			
	학 교 / 학 과 명		실습지도교수 성명			
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	실습기관명		실습기관등록번호			
	주 소	※ '도로명 주소' 로 기입해 주세요		전 화 번 호		
	실 습 기 간	년 월 일 부터		년 월 일 까지		
	실 습 시 간	총 시간 (1일 평균 시간)				
	실습지도자명		사회복지사 자격번호 (취 득 일)	제 - 호 (. . .)		
	실 습 지 도 자 경 력 기 간		기 관 명	직 위	직종(직책)	
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
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	

위와 같이 실습 내용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실습지도자: (서명 또는 인)

실 습 기 관: (직 인)

년 월 일

실습지도교수: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

- 실습기관 등록번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(<http://lic.welfare.net>)에 실습기관으로 등록한 기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실습지도자, 실습기관,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은 세 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예시는 홈페이지(<http://lic.welfare.net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.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,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《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》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[별표]

- ① **실습기관:**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·시설, 기관 및 단체로 한다.
- ② **실습지도자:**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.
- ③ **실습시간:**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※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, 미충족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.